

2001. 10. 24.
구미시의회 의장

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”을 “(문화재에 대한 감면)”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

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u>제9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</u>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<u>< 신 설 ></u>	<u>제9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</u>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<u>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.</u>